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28호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4일

임실군의회의장 임실군의회 의장인

1. 제정이유

임실군 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조기 폐기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바. 보조금 지원 및 지원 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제8조)
사. 폐기 업소의 지정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3) 전자우편: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5에 따른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를 말하며, 관내에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10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파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후 농기계”란 2012년 이전(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농업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의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
3.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기준
4.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절차
5. 그 밖에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 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
2.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일 것

제7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대상은 노후 농기계의 소유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 임실군에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보조금 지원 대상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2.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4.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로 확인된 불법 생산·유통 농기계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 ①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지정한 폐기 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폐기 업소가 노후 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

관련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 기계 · 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 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 폐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농업기계 폐기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또는 영상물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된 형식표지판
2. 인수 시 농업기계의 중량
3. 농업기계의 해체 과정
4. 폐기 후 농업기계의 상태(본체 중 차대에 각인된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농업용 트랙터의 경우 보호구조물 폐기 상태를 포함한다)

③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9조의4제6항에 따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운기
2. 트랙터
3. 관리기
4. 이앙기
5. 콤바인
6. 스피드스프레이어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의 폐기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6항에 따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폐기 농업기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